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19가단211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7. 9

판결 선고 2020. 8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3. 31.부터 2019. 12. 19.까지는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2016. 3. 27. 원고에게 "부산 기장군 C, D 일대 약 5,000평에 매립공사를 하려고 한다. 땅주인에게 동의도 받았고 군청에 관련 서류도 제출했으니 곧 형질변경 허가가 날 것이다. 나와 동업으로 공사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가지자. 그러니 묘지이장비, 민원해결비용 등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40,000,000원을 보내라"라고 거짓말하여,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. 3. 28.부터 2016. 3. 31.까 지 합계 40,000,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. 나.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. 10. 18.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54호(2016 고단2617호에 병합됨)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 을 거쳐 2018. 6. 15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,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마지막 날인 2016. 3. 31. 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. 12. 19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는, 2017. 8. 22. 원고와 을 1호증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54호 재판 중이던 2017. 8. 22. "위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, 재판부에서 피 고에게 선처를 하여 달라"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, 위와 같 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 니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
판사
받아들인다.